

체불임금 해결시스템 재편과 그 방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장시간노동 문제와 함께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325,000여 명, 체불임금 액수는 1조 4,28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도 임금체불 진정 및 구제 등을 거친 공식적 체불임금에 국한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에서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998년 체당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현재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서는 임금의 생활보장적 성격(체당금제도, 지연이자, 우선변제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벌칙 규정, 명단 공개, 임금체불 자료 제공), 임금관리(대장 작성 의무), 산업구조적 측면(임금 연대책임), 산업별 접근(건설업 공사도급 특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으로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뉘페식 해결 방식이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먹을 것 없는 잔치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흔히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임금체불'과 '체불임금'은 차이가 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 또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며,

‘체불임금’은 그 행위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임금채권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을 예방 및 제재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단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주요한 해결 수단으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체당금 제도로 대변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기금에서 직접 지불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IMF 이후 도입된 체당금제도는 초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등 체당금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① 복잡한 절차적 규정, ② 요건의 명확성 결여, ③ 지급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논의에서 간과되기 쉬운 근본 문제, 즉 ‘전체적인 체불임금 해결시스템 내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역할’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에 관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중시하여 사회보험 및 기타 복지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반면 일본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의 단순화와 행정적 지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KLI**